##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10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임호선·임미애·염태영

권칠승 • 조인철 • 이상식

정준호 • 이기헌 • 이연희

김병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 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법률 제 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한다)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진입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고 소방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으로 진입할 수있는 진입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을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을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또는 진입로를 막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구역의"를 "전용구역 및 진입로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을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또는 진입로를 막는"으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 진입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의 취약
	<u>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u>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한다)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u>포함하여야 한다.</u>
<u>②</u> ~ <u>④</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같음)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u>등</u>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	<u>·진입로 등</u> ) ①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 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u>전용구역의</u>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u>주차하거나</u>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④ (생 략)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
설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를 확
보하여야 한다.
2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
을 가로막거나 또는 진입로를
<u>막는</u>
③ 전용구역 및 진입로의
에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u>주차하거나,</u>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거
나 또는 진입로를 막는

④ (현행과 같음)